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8 일

여 수 시 장

김기현



여수시 조례 제2268호

붙임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대해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앞의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30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7조를 제30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8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9조를 제32조로 하고, 제26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참여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①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산정 기준, 감면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 기준, 모집 절차, 위촉 방법, 평가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앞의 “제4장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

제32조(종전의 제29조) 중 “제28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 보칙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경비의 지원) ① (생   략)</p> <p><u>②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우수 참여자 및 기관·시설·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5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해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제20조(참여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21조(수강료) ①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u></p> <p><u>③ 수강료의 산정 기준, 감면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신 설>

제4장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 설>

제20조 ~ 제23조 (생략)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

<신 설>

제24조 ~ 제28조 (생략)

제29조(준용) 제28조에 따라 위탁  
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장 보칙

<신 설>

제30조 (생략)

제22조(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강사를 위촉할 수 있  
다.

② 강사의 자격 기준, 모집 절  
차, 위촉 방법, 평가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장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 ~ 제26조 (현행 제20조부  
터 제23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

제27조 ~ 제31조 (현행 제24조부  
터 제28조까지와 같음)

제32조(준용) 제31조-----

-----  
-----  
-----  
-----.

<삭 제>

제6장 보칙

제33조 (현행 제30조와 같음)